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민체감, 기업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(3.27,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)한 32개의 부담금을 폐지·감면하는 「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」의 후속 조치로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에 부과되는 방제분담금에 대해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“ 부과 요율(안 제54조 제1항 관련 별표 9)(안)의 부과요율 인하
-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(3.27)한 「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」의 폐지·감면 대상 32개 부담금 중 방제분담금에 대한 부과요율 인하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4.17. ~ 5. 8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사전 규제심사협의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9 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	부과 기준	부과 금액	부과 방법
유조선	내항선	선박총톤수기준 1 톤당	2.74원	매 1회 입항할 때마다
	외항선		14.76원	
유조선 외의	내항선		1.41원	
선박	외항선		7.6원	

별표 9 제2호나목1) 중 “2.76원”을 “2.48원”으로 하고, 같은 목 2) 중 “9.85원”을 “8.84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9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방제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입항한 선박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방제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방제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83